##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선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6800 발의연월일: 2024. 12. 20.

발 의 자: 김선교·김성원·김위상

구자근・최보윤・최수진

김상훈 · 안태준 · 강대식

윤상현 • 박충권 의원

(11인)

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환경부장관이 한강수계의 수질 보전을 위하여 한강, 북한 강 및 경안천의 양안(兩岸) 중 특별대책지역은 그 하천·호소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, 특별대책지역 외의 지역은 500미터 이내의 지역 중 필요한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·고시하도록 하고, 상수원보호구역·개발제한구역·하수처리구역 등은 수변구역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발생 오수를 전량 공공하수처리함에도 불구하고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편입이 늦어져 수변구역 지정 해 제 대상이 되지 못한 지역의 경우에는 불합리한 재산권 제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역 지

정을 해제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수변구역 지정 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을 완화하고 정부의 수질보전정책의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4조제3항제2호 삭제).

법률 제 호

##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제2호를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수변구역의 지정・해제 등)	제4조(수변구역의 지정・해제 등)
①・② (생 략)	①・② (현행과 같음)
③ 환경부장관은 수변구역이	③
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	
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	
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	
에 따라 수변구역 지정을 해제	
하여야 한다. 다만, 제1항에 따	
라 수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	
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	
해당되는 사유로 「하수도법」	
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	
구역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	
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변구역	
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	<u>&lt;삭 제&gt;</u>
수질개선 등을 위하여 수변구	
역 지정을 해제하지 아니할	
것을 조건으로 수변구역의 일	
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	
치한 경우	
④·⑤ (생 략)	④·⑤ (현행과 같음)